

수사권 개혁법령에 대한 설명자료

'20. 9. 29. 법무부

① 수사준칙

가. 수사준칙 소관 관련

관련 규정

제70조(영의 해석 및 개정) ① 이 영을 해석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석 및 개정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둔다.

[의견 요지]

■ 상호협력의 개정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공동소관으로 지정되어야 함

- 수사준칙의 모법인 형사소송법은 법원, 검찰, 경찰, 특사경 등 여러 기관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나 법무부의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등 법원의 민사재판 관련 법령 또한 법무부의 소관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법무부장관이 국가사법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18. 6. 21. 서명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서도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수사에 관한 일반적 준칙을 정할 수 있다」고 하여 법무부장관을 수사준칙의 제정 주체로 명시하였습니다.

- 업무연관성이 있는 기관을 모두 공동소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를 경우 행안부(경찰)뿐만 아니라 법원, 해양수산부(해양경찰)는 물론 특사경이 소속된 각 행정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도 다 포함하여 공동소관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또한 수사준칙을 공동소관으로 할 경우 실무에서 문제가 발생해 개정이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더라도 소관 부처 전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게 되고, 이견이 계속되면 결국 국민의 인권보호나 형사 사법시스템 운영에 공백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니다.
- 수사준칙의 소관 문제는 대통령 직속 추진단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들이 장기간 논의한 결과,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수사준칙을 법무부의 소관으로 하되, 검·경 협력관계의 취지에 따라 '해석 및 개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우려를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법무부장관의 수사준칙 해석 및 개정에 있어 보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피혐의자 출석조사 시 의무적 입건 규정 관련

관련 규정

제16조(수사의 개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의견 요지]

- 피혐의자에 대한 출석조사 시 의무적으로 입건하도록 한 규정은 피의자를 양산하여 인권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 필요
- 입법예고안에서 피혐의자에 대해 출석조사를 실시한 경우 의무적으로 입건하도록 규정한 것은 수사기관이 실질적인 수사에 해당하는 내사를 진행하면서 법령에 규정된 수사절차를 회피하거나 피혐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이에 대해 피의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내사과정에서 피혐의자에 대한 출석조사를 최소화하여 전화조사나 우편·이메일을 통한 조사를 적극 활용하고, 본인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면 참고인 조사를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피의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다. 검사의 사건 이송 관련

관련 규정

제18조(검사의 사건 이송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건을 검찰청 이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2.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 수사 중 범죄 혐의 사실이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때. 다만 구속영장이나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제외한다.

[의견 요지]

- 압수수색검증 영장 발부를 검사의 사건이송 예외로 규정하는 것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무제한 확대하므로 제외 필요

- 입법예고안은 검찰에서 사건을 접수할 당시 범죄혐의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사건 접수 단계에서는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사를 개시하였으나, 수사한 결과 수사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검사의 직접수사를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경우에도 경찰에 사건을 이송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다만,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구속영장이나 신체, 주거 등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까지 의무적으로 이송하도록 할 경우 절차의 지연·반복으로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의무적 이송대상에서는 제외한 것입니다.

- 특히, 뇌물죄의 뇌물액수나 횡령죄의 횡령금액은 대부분 수사의 최종 단계에서 확정될 것인데, 이 단계에서 뇌물액수나 횡령금액이 수사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다고 해서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여 경찰의 추가 수사를 거쳐 다시 검찰이 송치받는 것은 불안정한 피의자의 지위를 장기화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 한편, 계좌나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는 달리, 실무에 있어 구속영장이나 신체, 주거 등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영장은 범죄 혐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명되어야 발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심사를 통해 남용 우려를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수사경합 관련

관련 규정

제18조(검사의 사건 이송 등)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건을 검찰청 이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1. 법 제19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된 때

제50조(중복수사의 방지) 법 제19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된 경우 검사는 그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 이송 등 중복수사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의견 요지]

■ 경찰의 수사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 검사의 사건 이송의무 규정 필요

- 개정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영장을 신청한 경우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이는 수사의 진행상황은 영장의 신청이나 청구의 선후와 별개로 사건마다 다를 수 있고, 때로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를 기다렸다가 함께 처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 일괄적인 이송의무를 규정하기보다는 검·경의 협력관계에 따라 개별 상황에 맞게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입법예고안은 수사경합 시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의 이송 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면 검사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을 이송하는 등으로 **중복수사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해 부당한 경합수사를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결정 관련

관련 규정

제52조(검사의 결정)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한다.

5. 보완수사요구

[의견 요지]

■ 검사의 결정 유형에서 ‘보완수사요구’는 제외되어야 함

-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기록, 증거물 송부와 함께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보조자로서 보완수사하는 기존 ‘수사지휘’와 달리, 사법경찰관이 **1차적 수사 종결권자로서 스스로의 책임 하에 보완수사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입니다.
- 따라서 입법예고안은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할 수 있고, 피의자나 주요 참고인의 진술을 들어보아야 하나 소재가 불분명하면 **수사중지**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한 후 사건의 결론이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검찰에 사건을 다시 송치하지 않는 것이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불송치 결정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도 부합하므로, 이를 위한 **전제로**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에는 검찰에 접수된 사건을 **종결**하고 **경찰로** 이전하는 처분이 필요합니다.
- 만약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하면서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서 2개의 절차가 진행되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 검사의 원칙적 보완수사요구 규정 관련

관련 규정

제5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견 요지]

- 검사는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경찰에 보완수사요구하도록 하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직접 보완수사하도록 한 것은 특별한 필요의 해석과 관련한 분쟁 소지가 있고, 실익도 없으므로 삭제 필요

- 해당 규정은 **검사의 직접수사를 최소화함**으로써 **검찰의 역할을 수사에서 기소·공판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규정으로,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자로서 지위와 책임에도 부합합니다.

사. 사경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관련

관련 규정

관련 규정 없음

[의견 요지]

- 피의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고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경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규정 필요
-
-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권리로써 법률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직접 제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 이의신청권은 헌법상 기본권인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도 직결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
- ※ 헌법재판소는 군행형법에서 수용자의 면회 횟수를 제한하도록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시행령에서 면회횟수를 매주 2회로 제한한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3. 11. 27.자 2002헌마193 결정).

아. 사경 수사중지 관련

관련 규정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수사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검사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

[의견 요지]

- 수사중지 시 모든 기록을 송부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 규정을 넘어선 불합리한 의무규정이므로 삭제 필요
- 개정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한 때에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검사에게 기록을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을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에 포함시키고,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수사중지의 경우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되는 등으로 사건이 재기될 가능성이 있고,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검사의 직접 수사를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불송치 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다만, 수사중지, 특히 참고인중지 결정이 편의적인 사건 종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법통제 절차로서, 검사에게 수사중지 기록을 송부하여 보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의 경우(90일)보다 단기인 30일 내에 검토를 마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자. 재수사요청 횟수 제한 관련

관련 규정

제64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을 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리에 위반되거나 송부기록(재수사결과 포함)에 의하더라도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이 있거나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의견 요지]

- 형소법에서 검사의 재수사요청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음에도 대통령령에서 제한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에 반한 법률위반이므로 수정 필요

- 검사의 재수사요청에도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검사가 재수사요청을 반복하는 것은 국가수사력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기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고려에서 재수사요청 횟수를 제한한 것입니다.
- 국회의 「4+1 협의체 후속 합의문」에서도 수사준칙에서 재수사요청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따른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송치요구를 할 수 있는 보완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차. 재수사요청 기한 관련

관련 규정

제63조(재수사요청의 절차 등)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8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1.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에 대해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의견 요지]

- 재수사요청은 90일 이내에 한해 허용되어야 함

-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사경 불송치 결정 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할 뿐 재수사요청의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입법예고안은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 등을 위해 재수사요청 기한을 90일로 한정하였으나, 예외적인 경우 90일 이후에도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음에도 재수사요청을 할 수 없다면, 이는 수사기관 스스로 오류를 시정할 기회를 봉쇄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보호 및 실체 진실 발견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기간의 제한 없이 재심 청구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불송치)에 대해 90일이 지나면 어떠한 경우에도 재수사요청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할 수 없습니다.

카. 재수사결과에 대한 송치요구 관련

관련 규정

제64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을 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리에 위반되거나 송부기록(재수사결과 포함)에 의하더라도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이 있거나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의견 요지]

- 법에 없는 재수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송치요구를 규정하면서, 이를 폭넓게 허용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되므로 삭제 필요
- 판례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재수사결과에 대한 송치요구 사유에 추가 필요

- 재수사요청 사유(위법, 부당)와 시정조치요구 사유(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는 서로 배척되는 개념이 아니고 상호 중복되는 개념이므로 입법예고안이 그 허용 범위를 부당하게 넓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18. 6. 21.자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에서도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한 이유에 시정조치요구의 사유가 포함됨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

2.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검사의 보완수사 및 징계 요구권 등

- 마. ① 검사는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경찰에 사건기록 등본 송부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시정조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되지 않는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3.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및 통지·고지의무, 고소인 등의 이익권 등
나. ②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는 경찰에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한 이유(제2의 마①항의 사유를 포함)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 법리에 반하거나 증거판단이 명백히 불합리하여 채증법칙에 위반되거나, 공소시효 또는 소추조건의 판단에 오류가 있어 불송치결정이 위법함에도 바로잡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하고, 실체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 재수사결과에 대한 송치요구 사유는 관계기관의 장기간 협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② 검사 수사개시 범죄범위

가. 마약범죄

관련 규정

- 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소유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
- 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9조제1항·제18조에 해당하는 죄 (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소유의 경우만 해당한다)

[의견 요지]

- 마약범죄는 경제범죄가 아니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서 삭제 필요

- 마약 수출입은 세관 통관을 거쳐 이루어지므로 경제범죄로 볼 수 있어 '마약 수출입범죄'에 한정하여 검사 수사개시 범죄범위로 규정하였습니다.
- 이는 관련 법에서 검사에게만 부여된 통관절차 중인 마약의 통제배달 요청 권한과 국제 마약수사에 전문성 있는 검찰 마약 수사관 역량을 활용하여 국가 범죄대응 역량을 유지할 필요성도 고려한 것입니다.
 - ※ 통제배달은, 수입통관 과정에서 마약이 적발된 경우 세관 당국에 요청하여 수사기관의 감시하에 배송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마약수입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기법으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통제배달을 위해 검사가 세관장에게 마약의 국내반입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 ※ 현재 검찰은 전체 마약류의 36%, 마약류 밀수의 70%, 필로폰 압수의 63% 등 수사 담당

나. 법무부령 위임 관련

관련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의견 요지]

- 중요범죄의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 개정 검찰청법 제4조의 법률 문언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6대 범죄에 속하는 세부 '죄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결국, 대통령령에는 6대 범죄에 속하는 세부 죄명을 규정하여 중요범죄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검찰청법 제11조(검찰청 사무 위임규정)에 따라 법무부령에 금액 등 검사 수사개시 세부 기준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검찰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한 것입니다.

다. 지검장의 수사개시 판단 조항 관련

[의견 요지]

- 지검장의 수사개시 판단조항은 직접수사의 통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
-
- 해당 조항의 경우, 검사 수사개시의 요건에 충족한다 하더라도, 직접수사의 적정 여부를 검사가 아닌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판단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 이는 검사의 직접수사 총량을 더욱 제한하고자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보다 엄격히 한 것으로 검사 직접수사 남용 우려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입니다.

③ 시행일 관련

가.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규정 시행일 관련

관련 규정

제1조(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2021년 1년 1일을 말하고, 같은 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2022년 1월 1일을 말한다.

[의견 요지]

- 법원에서도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규정을 즉시 시행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개정 형소법의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규정도 즉시 시행 필요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규정을 즉시 시행할 경우 수사·재판 실무상 절차적 혼란이나 범죄 대응역량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그러한 취지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은 다른 조항과 달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규정에 대해 그 시행시기를 4년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던 것입니다.
- 이러한 개정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규정의 시행시기에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입니다.

- 수사권 개혁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귀한 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1. 1. 1. 수사권 개혁법령의 시행을 앞두고 후속 하위법령 및 새로운 업무시스템 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어서,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 법무부는 국가형사사법제도의 중추기관으로서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를 향후 법령개정에 합리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인권과 권익에 보다 부합하는 수사권 개혁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입니다.